

『續光國志慶錄』의 고찰

김 순 희

(충남대학교 문헌정보학과 강사)

目次 :	I. 서언	IV. 『續光國志慶錄』의 간행 및 의의
	II. 『光國志慶錄』의 간행 경위	V. 결언
	III. 『續光國志慶錄』의 편찬 배경	

I. 서언

왕조국가였던 조선시대에 있어서 왕조의 정통성 문제는 국가의 기강을 좌우하는 중요한 사안이었다. 그러므로 이러한 문제가 발생했을 경우 임금을 비롯한 모든 신하들이 최우선의 과제로 생각하고 적극적으로 대처하였다. 태조 이성계의 직계 선조가 명(明)에 잘못 전해지고 그것이 그대로 『大明會典』에 수록된 사실이 밝혀지자 조선에서는 전력을 기울여 그것을 수정하고자 노력했다. 그러나 그것이 조선의 의도대로 수정된 것은 200여 년이 지난 선조대(宣祖代)에 이르러서야 가능했다. 그리고 이 국가적 사건을 기념하기 위한 서책이 편간된 것은 그로부터 100여 년이 지난 숙종대에 이르러서야 가능했으니 이 역사적인 문헌이 『光國志慶錄』이다. 본고의 대상인 『續光國志慶錄』은 서명에서 알 수 있는 바와 같이 『光國志慶錄』과 동일한 사건에 관련된 역사적 사실을 기록한 것임을 짐작할 수 있다. 필자는 이미 『光國志慶錄』에 대하여 간략히 검토하여 논문을 작성한 바 있다.¹⁾

따라서 본고는 그 논문과 맥을 같이하는 후속 작업이 되는 셈이다. 본고에서는 『續光國志慶錄』이 편찬·간행되게 된 배경과 과정을 자세히 검토하고 이 서책의 의의를 확인하고자 한다.

본고의 텍스트는 1771년(영조 47, 辛卯, 乾隆 36년)에 간행되어 10월 20일에 龍衛副司直이었던 權 禧(1710~?)에게 하사된 內賜本 『續光國志慶錄』이다²⁾

II. 『光國志慶錄』의 간행 경위

『光國志慶錄』이 처음 간행된 것은 1701년(숙종 27, 辛巳)이었다. 서명에서도 알 수 있는 바와 같이 국가적 명예를 회복한 사건을 기념하기 위하여 이 책이 만들어졌다.

명(明)의 법률과 제도를 기록한 가장 권위 있는 서적인 『大明會典』에 태조 이성계의 직계 선조가 잘못 기재된 것을 발견한 것이 1394년(태조 3년, 甲戌)이었다. 조선 측에서는 모든 외교 경로를 동원하여 시정을 강력하게 요구하였으나

1) 국립중앙도서관편, 『도서관』, 1999년 3월호에 발표예정

2) 乾隆三十六年十月二十日 內賜行副司直 權 禧光國志慶錄 正件 命除謝恩 右承旨 臣 任(手決)

이 문제가 완전히 해결된 것은 1588년(선조 21, 戊子)이었다. 이 해에 謝恩使였던 俞泓(1524~1594)이 重修本 『大明會典』을 받아 오게 되었는데 이때서야 이성계의 先系 문제가 확실하게 辨正되었던 것이다. 선조(宣祖)는 이 사실을 종묘에 고하고 謝恩使 일행을 크게 치하하는 등 국가적 경사로 생각했다.

謝恩使 俞泓이 돌아오는 길에 山海關을 들렀는데 당시의 主事였던 馬維銘이 축하의 시를 한 수 지었으며 俞泓도 화답시를 지었다. 뒤에 이 사실을 보고 받은 선조가 문장력 있는 신하들을 동원하여 馬維銘의 작품에 대해 和韻詩를 짓게 하고 선조 자신도 시 한 수를 지었다. 그리고 이때에 참가했던 35명의 작자가 지은 69수의 작품들을 모아서 詩軸으로 만들어 놓았는데 이것이 『光國志慶錄』의 底本이 되었다.

숙종대에 이르러 명분과 의리를 강조하던 세력이 득세함에 따라 이 역사적 사실이 다시 집중적으로 조명 받게 되었으며 이로 인해 1701년에 『光國志慶錄』이 목판본으로 간행되었다. 위의 詩軸이 중심이 되었지만 [頒赦時傳教]·[頒赦教文]·[謝恩表]·[太學儒生獻軸] 등의 문건을 첨부하여 서책의 형태를 갖추었다. 그 뒤 1744년(영조 20, 甲子)에 重刊되었다.³⁾

Ⅲ. 『續光國志慶錄』의 편찬 배경

1. 사건의 발단

1771년(영조 47, 辛卯) 5월 20일 전 持平이었던 朴弼淳이 상소를 올렸다. 상소의 내용은 燕

京에서 가져온 『綱鑑會纂』에 위에서 말한 璿系의 문제가 시정되지 않은 채 실려있다는 것이다.⁴⁾

이 상소는 영조와 신하들을 돌연 긴장시켰다. 이 『綱鑑會纂』은 『明紀輯略』에 연계되어 있는 것으로 청의 太學士인 朱璘이 1696년(淸 聖祖 康熙 35, 丙子)에 지은 것이다. 朱璘이 편찬한 책에 청의 禮部尙書 兼管翰院僉事 張英이 서문을 씌으로써 역사서로서의 체계가 갖추어진 것이다.

영조는 대신들을 소집시켜 대응책을 강구한 결과 청에 사건의 해결을 요구하는 陳奏使를 파견하기로 하였으며, 朱璘이 撰集한 『明紀輯略』을 팔거나 구입한 자들을 법으로 다스리도록 하고 책장수 8명을 흑산도의 종으로 삼게 했다.⁵⁾ 그리고 朱璘의 평이 붙여져 있는 『明紀輯略』을 찬술한 故 判書 李玄錫(1647~1703)의 관직을 追削할 정도로 단호하게 대처하였다.

2. 문제의 핵심

『光國志慶錄』의 편찬배경에서 설명했듯이 그 때에는 태조의 先系가 문제의 핵심이었으나, 영조대(英祖代)에는 또 다른 사건이 하나 더 첨부되었다. 그것은 인조반정(仁祖反正)으로 정권을 잡은 인조(仁祖)의 정통성을 의심하는 문구이다. 실록에 이에 대하여 언급하는 것조차 꺼려 자세한 내용이 나타나 있지 않지만 중국에 보낸 奏文에는 이 문제도 정식으로 거론하고 있다.

광해군을 폐위시키고 즉위한 인조는 일부 중국인으로부터 비난을 받은 경우가 있는데 대표적인 예가 柵島에 피난하여 세력을 구축하고 있

3) 金順姬, 『光國志慶錄의 考察』 『도서관』 (1999.3) 내용 參照.

4) 朝鮮王朝實錄 英祖 47年 5月20日(庚申) 條.

『前持坪朴弼淳 上疏 略曰 臣於昨日 偶伏見自燕來綱鑑會纂 繫以明史者 則康熙丙子間 朱璘所撰 而 所載我朝事 有璿系罔極之誣』

5) 『朝鮮王朝實錄』, 英祖47年 5月 26日(丙寅)條.

『而基中獨朱璘輯略者 快施邦刊冊僧 八人 黑山島爲奴』

었던 明末의 遺將 毛文龍이었다. 毛文龍은 자신에게 비협조적인 인조를 비방하는 말을 중국 측에 유포시켰는데⁶⁾ 이를 어떠한 경로로든 朱璘이 전해 듣고 자신이 撰集하는 책에 포함시키게 되었던 것이다.

그리고 역사기록을 검토하던 과정에서 明(明)의 陳建이 편찬한 『皇明通紀』⁷⁾ 에도 조선왕실의 璿系가 잘못 기재되었음을 확인하고 이것의 수정도 같이 요구했다. 영조가 생각하기에는 陳建이 『皇明通紀』에서 그러한 誣說을 기록해 놓았으므로 朱璘이 이를 보고 자신의 책에 삽입시킨 것으로 여겼다. 그리고 조선의 璿系가 제대로 수정·기록되어 있는 『大明會典』은 『五禮儀』와 같은 것이어서 중국사람이나 볼 것이지만 『明紀輯略』이나 『皇明通紀』는 만방의 백성이 모두 보는 것이므로 오히려 더욱 정확하게 기록되어 있어야만 한다고 생각했다.⁸⁾

3. 사건의 해결

이 사건에 대한 영조(英祖)의 고심은 대단했던 것으로 보인다. 영조는 여러 史庫에 간직된 『明紀輯略』을 曝曬할 때에 이 부분을 洗草하도록 명하였다.⁹⁾ 그리고 朱璘의 문집인 『靑菴集』

을 열람하거나 판매하는 자들을 가혹하게 처벌하여 鄭得煥 등 3인을 강변에서 梟首하여 온 나라의 분노를 풀고자 하였으며¹⁰⁾, 벌거벗긴 채 두 손을 뒤로 합쳐 묶어 이글거리는 태양 아래 나란히 엎드려 거의 죽게 된 사람이 100여명에 가까웠다¹¹⁾ 사건이 발발하자마자 청(淸)에 陳奏使를 보내어 왜곡된 기록의 수정을 요구하였는데¹²⁾, 陳奏使가 회답을 갖고 돌아온 것은 9월 하순이었다. 청(淸)에서 보내온 회답의 내용을 간략하게 요약해 보면 다음과 같다.

朱璘의 『明紀輯略』을 조사해 보았습니다.

乾隆 22년에 經陞任浙江督撫 臣 楊廷璋이 주청하기를 板片과 書本을 가지고 통행하여 조사해 보았더니 녹이고 부수어 버려 흔적을 없앤 것이 案에 있었고 陳建의 『皇明通紀』는 경성 안팎의 서사를 두루 방문해 보았으나 파는 곳이 없었습니다. 이 두 책은 중국에서 오랫동안 행하여지지 않았던 것이니 거듭 어떻게 改削을 용납하셨습니까? 라고 하였습니다.

그리고 조선의 왕이 일컫는 글 가운데 國祖 康憲王의 世系와 四世祖 莊穆王의 사적 등 두 임금을 무고한 것에 이르러서는 삼가 雍正 4년에 조선왕의 주청으로 깨끗이 밝게 하였으

6) 『朝鮮王朝實錄』 仁祖 4年 6月 21日(壬辰) 條.

‘……本國廢立之舉 名正言順 舉國同辭 ……文龍…彼之陰謀詭計 抑揚回測 自做浮言 使困我國’

7) 『皇明通紀』는 陳建이 1555年(明 嘉靖 34年)에 편찬한 明代의 역사서로서 『國立中央圖書館善本序跋集錄』(國立中央圖書館編印, 臺灣, 中華民國 82年(1953)) 史部1에 陳建의 序가 수록되어 있으며, 『AN INTRODUCTION TO THE SOURCES OF MING DYNASTY(明代史籍叢考)』(by Wolfgang Franke, Singapore : Kuara Lumpur University of Malaya Press, 1968.)에도 陳建이 편찬한 다른 서적과 함께 소개되어 있다.

8) 『朝鮮王朝實錄』 英祖 47年 6月 6日(乙亥) 條.

‘上曰 若無陳建之誣書 豈有朱璘之誣書 故通記則輯略之本 寧有辨其末而不辨其本者也 會典禮儀 見者不過國朝人 輯略通全紀則史紀 萬國皆見豈不痛迫’

9) 『朝鮮王朝實錄』 英祖 47年 5月 29日(己巳) 條.

‘又命諸處史庫所藏明史綱目 日後曝曬時 則其處洗草’

10) 『朝鮮王朝實錄』 英祖 47年 6月 1日(庚午) 條.

‘……得煥·霖·燾 並令訓將 梟示江邊 卽爲懸首 以洩舉國之憤’

11) 『朝鮮王朝實錄』 英祖 47年 6月 2日(辛未) 條.

‘時象讀與冊僧之 以不納靑菴集 裸體反接 列伏於樹陽之下 危死者 殆近百數’

12) 『朝鮮王朝實錄』 英祖 47年 5月 21日(辛酉) 條.

‘……領議政金致仁曰 一番陳奏似不可已矣……(右議政)金相喆曰 臣偏蒙國恩 莫效涓埃 願奉使以 往期於得請而還矣 上曰 右相請行 其忠可感 只副使書狀擬望’

며, 世宗獻皇帝께서 사관에 맡겨 상세하게 상고하고 깊이 조사하여 釐正하게 하였던 것입니다.

이제 흥정한 『明史』의 [朝鮮列傳]을 공손히 열람해 보았더니 그 시조의 世系와 仁祖의 즉위 부분은 참고하여 증거로 삼은 것이 이미 극도로 상세하고 명확하였으며, 종전에 있었던 야사에서 상고할 수 없는 말은 이미 모두 나누어 刪削하였습니다.

……만약 陳建의 『皇明通紀』와 朱璘의 『明紀輯略』 두 책이 귀국에서 혹 아직도 유전하는 것이 있을 경우에는 스스로 조사하여 태워 없애도록 하여 영구히 의심스러운 것을 막는다면 곧은 역사가 만세에 전해져서 일월이 항상 밝을 것입니다.¹³⁾

청(淸)의 반응은 한마디로 별문제가 되지 않는 것을 조선 측이 지나칠 정도로 민감하게 생각한다고 여기는 것이었다. 첫째, 이성계의 先系와 인조반정(仁祖反正)의 정당성은 이미 正史에 명확하게 기록되어 있으므로 문제될 것이 없으며, 朱璘의 『明紀輯略』은 판본 자체가 없고 陳建의 『皇明通紀』는 시중의 서사에서 발견할 수조차 없으므로 이것 또한 문제될 것이 없다는 것이다.

둘째, 조선에서 만약에 이 두 책이 유행하거나

전해진다면 금서로 지정하고 소멸시키면 된다는 것이다. 사실 청(淸) 측에서는 별달리 조치할 바가 없었을 것이다. 청은 단지 조선과의 외교적 관계를 고려하여 영조를 위로하는 차원에서 답변하였던 것으로 보인다.

영조는 청의 이러한 태도가 만족스럽지는 않았으나 자신의 뜻이 관철되고 正史에 정당한 사실이 명확하게 기재되어 있음을 다시 한번 확인하였으므로 이 사건을 일단락 짓게 되었다.¹⁴⁾

IV. 『續光國志慶錄』의 간행 및 의의

1. 간행 경위

영조는 학문을 애호하였고 서적의 편찬과 간행에 많은 관심을 갖고 있었으며 이를 적극 장려했던 군주로 알려져 있다. 영조대(英祖代)에 간행된 서적은 경전과 학술, 실학 및 군사관련 분야, 언해본과 외국어 학습용, 특히 역사관련 분야 등 다방면에 걸쳐 있었다. 이 시대에 간행된 서적을 정리해 보면 경부(經部)에 34종, 사부(史部)에 157종, 자부(子部)에 55종, 집부(集部)에 31종 등 모두 277종에 이르고 있는데¹⁵⁾ 이와 같은 방대한 서적 간행 사업은 영조대(英祖代)의 융성한 출판상황을 쉽게 짐작할 수 있게 한다.

13) 『朝鮮王朝實錄』 英祖 47年 9月 24日(辛酉)條.

『朱璘輯略』於乾隆二十二年 經陞任浙江督撫 臣 楊廷璋等奏請 將板片書本 通行查 銷毀在案 其陳建通紀 臣等遍訪京城內外書肆 竝無 售者 是二書在中國 久已不行 更何所容其改削 至該國王所稱書中 述 其國祖康憲王世系 及其四世祖莊穆王事蹟二條 伏查雍正四年 經該國王 奏請昭雪 蒙世宗獻皇帝 宣付史館 詳加稽核釐正 今恭閱 欽定明史朝鮮列傳 載其始祖世系 及國人 廢理立徐處 考據已極詳明 所有從前野史無稽之談 悉已割白刪 ……若陳建通紀 朱璘輯略二書 該國或尚有流傳 自行查禁焚銷 永杜疑竇 則直史垂萬歲 而日日常昭

14) 『朝鮮王朝實錄』 英祖 47年 9月24日(辛酉)條.

『上曰 今則更無憾矣 大臣以下 頓首稱賀 教曰 昨聞事則雖成 其猶未快 今日令讀朕本 自此以後 專對之意快伸 噫 幾日用心 於今渙然水釋

15) 姜順愛, 『朝鮮 英祖朝의 圖書 編纂 및 刊行에 대한 書誌的 研究』, 碩士學位論文, 成均館大學校, 1982, 155p.

영조는 『光國志慶錄』에 상당한 관심을 갖고 있었다. 영조(英祖)는 1744년(영조 20, 甲子)에 이 책의 소개를 물었는데 아무도 대답하는 사람이 없자, 校書館에 명하여 『光國志慶錄』을 重刊하도록 하고 그 판본을 春秋館에 보관시켰다. 영조는 『光國志慶錄』이 나라를 빛낸 사실을 기록한 책이라고 생각하고 있었다.¹⁶⁾ 그리고 進宴禮를 행할 적에도 『光國志慶錄』의 고사에 따라 小識를 지어 내린 뒤 大提學으로 하여금 序를 짓게 하였으며 여러 종친과 신하들을 列書하고 芸館으로 하여금 활자로 인쇄하여 大內에 들인 뒤에 頒賜하도록 했다.¹⁷⁾

이러한 상황에서 『光國志慶錄』의 편찬 배경이 되었던 사건이 다시 문제시 되었으니 영조가 심각하게 인식하는 것도 이해가 된다. 이 문제가 해결되자 영조는 『光國志慶錄』을 본받아 이 사실을 경축하기 위하여 『續光國志慶錄』을 간행토록 하였다. 그리고 영조는 손수 銘과 序를 지음으로써 그 동안의 사정을 기록하고 이 사건을 해결하기 위해 노력했던 자신의 의지를 표현했다.

무릇 『光國志慶錄』은 어찌하여 지어지게 되었는가. 皇朝의 종계를 바르게 하고 일월을 밝히는 은혜에 힘입어서 小邦의 군신이 모두 송축하여 그렇게 된 것이다. 또한 명(明)의 사신이 온 뒤에 해와 별처럼 밝혀져서 가히 百代에 드리울 수 있었는데 어찌 陳建과 朱璘

이 皇朝의 백성으로서 잘못되고 틀린 것을 이 어반아 망측하고 폐악한 말을 마땅히 기록하지 않아야 되는데 기록하리라고 생각이나 했겠는가. 어찌 놀라고 분한 마음을 이길 수 있으리오.

오호라 폐악한 말이 아직도 거리에서 유행하니 만약 지금 말끔히 씻어 버리지 못한다면 彝倫이 오히려 저자거리에서 어두어질 것이다. 지금의 이 조치를 어찌 감히 터럭만큼이라도 소홀히 하겠느냐. 특별히 명하노니 숨기지 말고 의심하게 하지 말라. 『皇明通紀』와 『明紀輯略』을 우리 나라에 사 가지고 들어오는 자와 감추어 두고서 소문내지 않는 자들을 모두 엄히 처분하여 우리 나라에 (그 책이) 남겨지지 않도록 하라.¹⁸⁾

그리고 영조는 이어서 중국 측의 회답으로 인해 이 사건이 종결된 것으로 생각하고 이를 기리기 위하여 『續光國志慶錄』의 편찬 및 간행을 명했다.

지금부터 이후로 폐악한 말이 이미 소멸되고 일월이 다시 해외에 밝혀졌으며 도깨비들이 천하에 스스로 숨었으니 어찌 경사를 나타내지 않겠느냐. 이름하여 『續光國志慶錄』이라 하고 스스로 책머리에 銘을 지어 놓는다. 대략 지난날을 본받았으나 詩는 이미 사용했

16) 『朝鮮王朝實錄』 英祖 20年 2月 11日(己未)條.

‘命校書館 重刊光國志慶錄 藏其板于春秋館……至時上下詢板本所在 而不得之 教曰 光國志慶錄 於我東 爲有光冊子 而芸閣無板本可乎 仍是命’

17) 『朝鮮王朝實錄』 英祖 42年 8月 27日(甲子)條.

‘上御崇政殿行進宴禮……教曰 遵光國志慶錄故事 略敘小識 以下令大提學撰序 列書諸宗諸臣 令芸館活印 內入後頒賜’

18) 『續光國志慶錄』, {御製銘 并小序}.

‘夫光國志慶錄何爲而作也 蒙皇朝正宗系明日月之恩 小邦君臣咸頌而然也且 明史來到之後 皎如日星可垂百代 而豈意陳建朱璘 以皇朝人孫 承訛襲謬 罔測持說不當錄 焉可勝駭憤嗚呼 此持說尚流行於燕肆間 若不及今快辭 則彝倫猶晦於市肆 今者此舉 豈敢一毫忽焉 特命 專對 通紀輯略之我國購來者 掩置不聞者 皆嚴加處分 其於東國庶可無遺’

으므로 한 聯을 써서 原任 奉朝賀, 三使臣, 한 양에 있는 二品 이상의 관리, 여러 都尉와 副尉, 八道の 道伯, 兩都의 留守, 承政院, 弘文館, 世子侍講院, 藝文館 등에 명하여 和韻하여 (한 聯씩) 내도록 명하였다. 그리고 告廟文과 頒敎文을 먼저 위에 썼다. 이것은 내가 말년에 本錄을 이어서 천년까지 전하고자 하는 뜻이다.¹⁹⁾

영조가 『續光國志慶錄』의 序를 쓴 것은 1771년(영조 47, 崇禎戊辰 紀元後三辛卯) 9월 27일이었다. 그리고 같은 해 10월 18일에 『續光國志慶錄』이 완성되었다.²⁰⁾

2. 『續光國志慶錄』의 체제

영조는 『光國志慶錄』을 본받아 『續光國志慶錄』을 편찬하였으나 체제까지 그대로 답습하지는 않았다. 『光國志慶錄』은 馬維銘의 原詩에 대한 여러 신하들의 和韻詩이므로 수록된 것이 모두 오언율시(五言律詩)였지만, 『續光國志慶錄』은 영조(英祖)가 지은 七言 二句에 和韻하였으므로 七言 二句로만 구성되어 있다.

『續光國志慶錄』의 체제를 살펴보면, 먼저 卷首에 御製銘과 序가 있고, 이어서 [御製廟社告由文]과 [御製告廟後頒敎文]이 있다. 다음 장에 御製 御筆로 '光國皇恩今後明 遙瞻燕萬懷切' 이라고 쓴 七言 二句가 있으며, 끝이어 王世孫이 '明·切'의 韻字에 和韻하여 息爪藍良覺增明 感舊宸章誠更切'의 二句를 지어 친필로 써 놓았다. 이어 領中樞府事 金相福을

	官 職 名	姓 名	官 職 名	姓 名	官 職 名	姓 名
1	領中樞府事	金相福	2 議政府領議政	金致仁	3 判中樞府事	金陽澤
4	議政府左議政	韓翼謨	5 議政府右議政	『金尙喆	6 判中樞府事	李昌誼
7	錦城尉	朴明源	8 永城尉	申光綏	9 判敦寧府事	李益炆
10	知中樞府事	南泰齊	11 左參贊	申晦	12 司直	李昌壽
13	奉朝賀	南有容	14 司直	趙雲達	15 戶曹判書	蔡濟恭
16	司直	安允行	17 工曹判書	金時默	18 刑曹判書	沈 鏞
19	副司直	李思觀	20 副司直	沈星鎮	21 副司直	金始煥
22	副司直	李光溥	23 副司直	韓光會	24 吏曹判書	元仁孫
25	副司直	洪名漢	26 知敦寧府事	徐命膺	27 禮曹判書	鄭弘順
28	京畿觀察使	朴相德	29 副司直	趙明鼎	30 奉朝賀	趙 噉
31	副司直	洪樂性	32 漢城判尹	李景祐	33 副司直	黃景源

19) 『續光國志慶錄』, [御製銘 并小序].

'于今以後悖說已消日月復明於海外 魁自屏於宇內 豈無表慶 名曰續光國志慶錄 自銘弁卷 略效昔年 而詩已謝 故以一聯 手書以下 命時原任奉朝賀三使臣 在京二品以上 諸都尉副尉 八道道臣 兩都留守 銀臺玉署春坊翰注 裴進 告廟文頒敎文先書於上 此子暮年 續其本錄 流傳千祀之意也'

20) 『朝鮮王朝實錄』英祖 47年 10月 18日(乙酉)條.

續光國志慶錄成

34	副司直	李	35	副司直	邊致明	36	兵曹判書	趙 暉
37	副司直	李最中	38	平安道觀察使	具允鈺	39	副司直	尹東暹
40	副司直	尹得雨	41	吏曹參判	李 潭	42	副司直	趙榮進
43	副司直	鄭運維	44	戶曹參判	金漢耆	45	青城尉	沈能建
46	綾城尉	具敏和	47	副司直	鄭光忠	48	副司直	李應協
49	副司直	南泰著	50	漢城府左尹	尹得養	51	副司直	李長夏
52	副司直	申 暉	53	副司直	俞彥述	54	副司直	沈 瓚
55	副司直	鄭光漢	56	江原道觀察使	金鍾正	57	副司直	李廷喆
58	副司直	韓師直	59	副司直	鄭基安	60	副司直	沈 毅
61	同敦寧府事	鄭存謙	62	副司直	金華鎮	63	副司直	宋瑩中
64	成均館大司成	閔百興	65	江華府留守	俞彥民	66	副司直	李重祐
67	刑曹參判	柳 脩	68	副司直	安 僕	69	副司直	嚴 璿
70	副司直	趙榮順	71	工曹參判	鄭厚謙	72	副司直	韓必壽
73	副司直	洪重一	74	副司直	李宜哲	75	副司直	金光國
76	副司直	李彥衡	77	副司直	申 綱	78	開城府留守	趙重晦
79	副司直	權 導	80	咸鏡道觀察使	宋文載	81	禮曹參判	李徽之
82	承政院都承旨	李聖圭	83	副司直	李在協	84	兵曹參判	具 庠
85	副司直	李昌儒	86	都摠府副摠管	金勉行	87	副司直	魚錫定
88	副司直	高夢聖	89	光恩副尉	金斗性	90	興恩副尉	鄭在和
91	全羅道觀察使	尹東昇	92	慶尙道觀察使	李命植	93	黃海道觀察使	洪良漢
94	忠清道觀察使	閔百奮	95	承政院左承旨	李在簡	96	承政院右承旨	李碩載
97	承政院左副承旨	任希教	98	承政院右副承旨	李壽鳳	99	承政院同副承旨	洪 檢
100	禮曹參議	朴弼淳	101	執義	沈 之	102	弘文館校理	李宅鎮
103	弘文館校理	朴相岳	104	弘文館副校理	李得臣	105	弘文館副校理	鄭好仁

위시하여 총 120명의 신하들이 이 韻字를 사용하여 지은 七言 二句가 관직순으로 수록되어 있다.

권말에는 별다른 간기나 발문이 없다. 참고로 영조의 어명을 받고 여기에 참가한 신하들의 관직과 성명을 소개해 보면 표와 같다.

3. 서지 기술

본고의 텍스트인 權 內賜本『續光國志慶錄』을 서지 기술하면 다음과 같다.

續光國志慶錄. [英祖 命編] [英祖 47年(1771)]
木版本.

1冊(25張). 33.5×21.5cm.

四周雙邊. 半葉匡郭: 23.1×17.1cm. 有界. 7行
18字. 上下內向二葉花紋魚尾.

版心題：續光國志慶錄.

序：皇朝崇禎戊辰紀元後三辛卯(1771) 菊月乙丑
日書(御製銘并小序).

內賜記：乾隆三十六年(1772) 十月二十日 內賜 行
副司直 權 續光國志慶錄 正件 命除謝恩 右
承旨 臣 任(手決).

4. 『續光國志慶錄』의 의의

앞서 말했듯이 영조는 『光國志慶錄』에 상당한 애착심을 갖고 있었다. 영조는 重刊本을 간행토록 명하면서 肅宗의 예를 본받아 손수 和韻詩를 짓기도 했다. 이러한 점에서 영조가 『續光國志慶錄』을 편찬하면서 御製銘과 序를 지었을 때 그 감회가 남달랐을 것이다. 그런데도 영조가 『光國志慶錄』과 체제를 달리하여 이 책을 편찬한 것은 발전적인 측면으로 이해된다. 만약 전례를 답습하여 五言律詩를 수록해 놓았다면, 이는 구태의연함을 면치 못하는 것이라 할 수 있겠다. 영조는 五言律詩를 七言 二句로 내용은 줄였지만, 『光國志慶錄』에 35명의 작품이 수록된 것에 비하여, 『續光國志慶錄』에서는 무려 121인의 시구를 수합해 놓았으니 그 질량 면에서 『光國志慶錄』에 비해 소략하지 않게 되었다.

그리고 『續光國志慶錄』이 갖고 있는 또 하나의 의의는 동일한 역사적 사건을 배경으로 70년의 사이를 두고 두 권의 책이 연속적으로 간행되었다는 점이다. 이러한 사실은 그 유래를 찾기 힘들다. 개인적인 관심이 깊을 때 연속적으로 저술하는 경우는 있어도 이처럼 2명의 군주가 국가적 차원에서 서적의 편간을 명령했다는 것은 드문 일이 아닐 수 없다. 이것은 그만큼 이 『續光國志慶錄』과 『光國志慶錄』이 역사적 가치를 갖고 있다는 것을 증명하는 것이다.

V. 결론

『續光國志慶錄』은 1771년(영조 47, 辛卯)에 간행된 서적으로서 조선의 王家에서 가장 첨하게 생각하고 있던 정통성 문제를 외교적으로 해결한 것을 경축하는 뜻에서 편찬되었다.

이보다 70년 전에 간행된 『光國志慶錄』의 예를 본받아 이 서적이 편찬되었으나 그대로 답습하지 않고 발전적인 양상을 보였다. 본고는 이 서적의 편찬 배경과 간행 경위 및 의의 등을 다각도로 검토해 보았다. 본문에서 논의한 내용을 요약하여 결론을 삼고자 한다.

1. 『續光國志慶錄』의 편찬 배경은 『光國志慶錄』의 역사적 사실과 동일하다. 그것은 곧 태조 이성계의 先系가 明에 와전되었는데 이 왜곡된 사실이 『大明會典』에 그대로 실리게 됨으로써 발생한 문제이다. 이 문제는 우여곡절 끝에 선조 21년(1558, 戊子)에 해결되었으며, 그로부터 100여 년 뒤인 1701년(숙종 27, 辛巳)에 『光國志慶錄』이라는 이름으로 간행되었다.

그런데 그 뒤 1771년(영조 47, 辛卯)에 朴弼淳의 상소로 청의 朱璘이 찬술한 『明紀輯略』에 이 사실이 수정되지 않은 채 수록되었음이 밝혀져 또 다시 심각한 사안으로 부상하였다. 역사서 검토 과정에서 명의 陳建이 편찬한 『皇明通紀』에도 이러한 사실이 기록되어 있음이 확인되었다.

2. 당시 조선에서는 문제의 심각성을 인식하고 곧 바로 중국에 陳奏使를 보내어 문제를

해결하고자 하였다. 중국 측에서도 이에 대하여 즉각 대처하였는데, 이미 『明紀輯略』은 판본조차 확인할 길이 없으며, 『皇明通紀』는 시중에 유통되지 않는다는 회답을 보내왔다.

그리고 더불어 만약 조선에 아직도 이러한 서적이 유행한다면 그 서적의 존재를 없애므로써 문제를 완벽하게 해결할 수 있을 것이라고 위무하였다.

3. 영조는 이를 수궁하여 문제가 해결된 것으로 믿고 『續光國志慶錄』을 편찬함으로써 국가적 경사를 경축하였다. 영조는 손수 御製銘과 序를 지었는데 그 속에서 저간의 사정과 이것을 해결하기 위하여 전심 노력했던 자신의 의지를 나타내었다. 『光國志慶錄』의 전례를 따라 책을 편찬하였으나, 체제와 내용은 약간 달리 했기 때문에 오히려 발전적인 면모를 지니게 된 것으로 보인다. 영조는 『光國志慶錄』의 편찬 정신을 이어받으면서도 王世孫과 120명에 이르는 신하들에게 자신이 직접 지은 시구에 和韻하여 시를 짓도록 하고 그것을 모두 모아 한 권의 책으로 간행함으로써 이 책의 문헌적 가치를 높였다.

4. 『續光國志慶錄』과 『光國志慶錄』은 王朝先系の 잘못된 기록을 밝히는 동일한 역사적 사건을 배경으로 70년간의 사이를 두고 연속적으로 간행된 서적이라는 점에서 의의가 있다. 게다가 2명의 군주가 직접 개입하여 서적의 편찬과 간행을 선도했다는 사실도 이 두 권의 서적이 지니고 있는 비중을 더욱 잘 나타내 주고 있다고 하겠다.

이에 따라서 『光國志慶錄』과 『續光國志慶錄』 2권의 서적은 조선왕조의 정통성을 밝히는데 있어서 매우 중요한 역할을 하였던 귀중한 문헌이라 하겠다.

참고문헌

1. 國史編纂委員會 編. 『朝鮮王朝實錄』 影印本. 서울:1970.
2. 承政院 編. 『承政院日記』 影印本. 서울: 國史編纂委員會, 1970.
3. 英祖 命編. 『光國志慶錄』 英祖 20年(1744, 甲子) 重刊木版本.
4. _____. 『續光國志慶錄』 英祖 47年(1771, 辛卯) 木版本.
5. 朝鮮總督府 編. 『朝鮮史』 京城: 昭和 12(1937).

- 제37회 전국도서관대회 발표논문 공모 요강.....62쪽
- 제2회 도서관 홈페이지 경연대회 안내66쪽
- 제65차 국제도서관협회연맹(IFLA)총회 참가신청 안내.....68쪽